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860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30,184원 및 그 중 39,933,253원에 대하여 2021. 9. 6.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5. 1. 10. E 상도약수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F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5. 4. 16. 이 사건 가맹사업자인 (주)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8. 6. 1.까지 남아 있는 F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3조 제1항), 소외회사는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항).

다. 피고들은 2017. 1. 19.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회사는 2018. 1. 5.경 피고들에게 2018. 1. 10.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F은 2013. 5.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회사, 보험기간을 2013. 6. 2.부터 2018. 6.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64,000,000원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주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배상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계약자가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제7조, 제21조).

바. 피고 C은 2015. 6. 3., 피고 D은 2015. 6. 10. 각 원고와 사이에, 변경기준일은 공통적으로 2015. 4. 16.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계약당사자를 종전의 F에서 피고들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소외회사는 2020. 12.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미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8. 6. 소외회사에게 내외장 시설잔존가 1,572,201원, 철거비 2,110,000원, 정산미수금 35,911,994원, 전기요금 74,943원, 가맹점계정부족액 264,115원 등 합계 39,933,253원을 피고들의 이 사건 가맹점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로 보고,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8. 7.부터 2021. 9.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96,931원이고, 2021. 9. 6. 이후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9%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1. 19.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소외회사가 2018. 1. 10.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9,933,253원 및 이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8. 7.부터 2021. 9. 5.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196,931원 등 합계 40,130,184원 및 그 중 보험금 39,933,253원에 대하여 202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2.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5. 6. 10.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에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피고 D의 서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소외회사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3호증의 1,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과 F 사이에 2015. 1. 10. 작성된 이 사건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서(갑 6호증)에 있는 피고 C의 인명과 동일한 인명이 피고 C과 소외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갑 7호증)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계약당사자를 종전의 F에서 위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전제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F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하성원